

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 준수사항

2016. 10. 5.







제조 수입업자 준수사항

사례

- 1. 1등급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1등급으로 등록
 - 2~4등급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등록
 -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등록(수출용)
 - 참고사항 :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(본부 의료기기관리과)
- 2. 제품과 품목명이 상이





☞ 제조 수입업자 준수사항

사례

[품목 현황, 2016.2.1 기준 기준]

	대분류		등급별품목						
			소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1~4 등급	
	계	138	2,220	595	1,024	343	256	2	
(A)	기구.기계	93	1,773	517	885	222	149	-	
(B)	의료용품	9	242	33	23	89	97	-	
(C)	치과재료	27	152	39	95	11	7	-	
(D)	체외진단용시약	9	53	6	21	21	3	2	

[품목 허가 인증 신고 현황, 2015년 기준]

구 분	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
계	81,589	44,978	24,999	9,115	2,497	
제 조	27,166	10,947	10,853	4,409	957	
수 입	54,423	34,031	14,146	4,706	1,540	





제조 수입업자 준수사항

의료기기법 제13조(제조업자의 의무)

-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**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** 하며, 그 밖에 **자가시험(自家試驗) 등 생산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**을 지켜야 한다.
- ②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**보고**하여야 한다.
 - ※ 당해연도 1월 31일 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
 - ※ 1차: 50만원, 2차: 80만원, 3차: 100만원
- ④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품질책임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
의료기기법 제15조(수입업허가 등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,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 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조"는 "수입"으로, "제조업허가"는 "수입업 허가"로, "제조허가"는 "수입허가"로, "제조인증"은 "수입인증"으로, "제조신고"는 "수입신고"로, "생산관리"는 "수입관리"로, "제조업자"는 "수입업자"로 각각 본다.

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3. 원자재·완제품의 입출고,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(시험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)에 관한 문서를 작성·비치하고, 그에 따라 제조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
- 4. 제3호에 따른 제조 및 품질검사에 관한 제조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리 기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이를 제조일부터 5년(제품 수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) 동안 보존할 것
- 5. 출고된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**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**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
- 6. **멸균제품인 경우**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**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할 것**
- 7. 전기·기계 제품의 경우 전기·기계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
- 8. 인체에 직접적·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

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9.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 (의료기기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)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
- 10.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유지할 것
- 11.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것. 이 경우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의료기기로서 같은 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같은 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.
- 12. 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를 할 것
- 13. 종업원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, 종업원에게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의 생산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제공할 것

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4. 재심사, 재평가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,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(부작용 보고 관리를 포함한다)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
- 15. **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**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
 - 가. 별표 2 제2호의 **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**, **적합한**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것
 - 나. 가목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결과, 검사필증 발행일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이를 출고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할 것



-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6.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
- 가.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,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 필증을 발행할 것
- 나. 검사필증의 발행 절차·방법, 회신기간,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 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

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

- 1. 시설기준
 - 가. 제조소의 시설
 - 제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소, 원료·자재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행하는 시험실, 원료·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,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
 - * 시설의 기준, 제조공정 및 시험의 위탁/관리책임 규정되어 있음
- 2.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

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품질매뉴얼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야 함

- -> 품질방침, 계약검토, 설계관리, 문서 및 자료관리, 구매관리, 제품의 식별 및 추적관리, 제조공정의 관리, 구매품 및 제품의 시험검사, 부적합품의 관리, 측정장비의 관리, 시정 및 예방조치, 제품의 취급·보관·포장·보존 및 인도에 관한 사항, 교육훈련, 그 밖에 제품의 유효성확인(Validation) 등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
- * 세부기준은 "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(식약처 고시)"에 마련되어 있음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수입업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교차오염이나 외부로 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
- 2. 의료기기의 입출고 및 품질관리(시험 기준 및 방법, 표시사항 및 포장 등을 포함한다)에 관한 문서와 부속품의 보관·출하에 대한 관리기록을 작성·비치하고, 그에 따라 수입 및 품질검사 를 철저히 실시할 것
- 3. 제2호에 따른 수입 및 품질검사에 관한 수입단위별 기록 및 고객 불만처리 기록을 작성·비치하고, 이를 수입일부터 5년(제품 수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명에 상응하는 기간을 말한다) 동안 보존할 것
- 4. 멸균제품인 경우에는 **멸균되었음을 검증한 후 출고할** 것
- 5. 전기·기계 제품의 경우 전기·기계적 안전과 전자파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
- 6. 인체에 직접·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 생물학적 안전을 확보한 후 출고할 것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7. **품목별**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**제품표준서**를 작성하여 비치할 것
 - 가. 의료기기의 명칭(제품명, 품목명 및 모델명)
 - 나. 수입의료기기의 제조사명 및 제조국명
 - 다. 모양 및 구조·완제품의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
 - 라. 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**의료기기 용기 등에 적어야 할 사항**
- 마. 설치방법 및 순서(설치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만 해당한다)
- 바. **멸균방법·멸균기준 및 멸균판정에 관한 사항(멸균의료기기만 해당한다)**
- 사. 제품표준서의 제정자 및 제정연월일 (개정한 경우에는 개정자·개정연월일 및 개정사유를 적는다)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8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**수입관리기준서**를 작성·비치할 것
- 가. 제품관리 및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
- 나. 시험검사결과 판정 및 불합격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
- 다. 시험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**수입의료기기 제조업자와의 연락방법**
- 마. 수입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상황에 대한 확인사항
- 바. 수입관리기준서의 제정자 및 제정연월일

(개정한 경우에는 개정자·개정연월일 및 개정사유를 적는다)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9. 수입의료기기의 표시사상 및 포장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, 그 기록을 작성할 것
- 10. 제품보관시설을 점검하여 그 기록을 작성할 것
- 11. 품질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것
 - 가. 출고된 의료기기의 품질에 관하여 불만이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, 이를 기록 보관할 것
 - 나. 수입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표준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비치, 활용할 것
 - 다. 나목의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 확인할 것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2. 출고된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
- 13. 종업원에게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교육·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,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할 것
- 14. 허가 또는 인증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 (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)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
- 15.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하여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. 이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 받은 후 수입한 것으로 본다.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6.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
- 17. 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최신의 기준규격을 반영하여 시설 및 품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수입관리를 할 것
- 18. 재심사, 재평가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,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(부작용 보고 관리를 포함한다)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



-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9.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
 - 가. 별표 2 제2호의 **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**, **적합한**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것
 - 나. 가목에 따른 **검사의 내용 및 결과, 검사필증 발행일** 등에 대한 **기록**을 작성·비치하고, 이를 출고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할 것
- 20.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
- 가. 별표 2 제2호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고,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 필증을 발행할 것
- 나. 검사필증의 발행 절차·방법, 회신기간,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지시 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

의료기기 GMP/GIP '자가시험' 심사지침





의료기기 GMP/GIP '자가시험' 심사지침



- ▶ '자가시험'은 최종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GMP 기준 운영내에서의 관련 활동으로서 결과적으로 당해 규격 적합성을 확인(보증)하는 것도 포함된다.
- ▶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자가 GMP/GIP 기준에 따른 품질경영 계획서(제품표준서) 등에 '자가시험'으로 기재하는 항목 및 시험기준은 원칙적으로 품목허가증의 '시험규격'에 의거하여 기재하되
 - 품목허가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가 시와 동일한 품질 유지여부를 확인(보증)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규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



의료기기 GMP/GIP '자가시험' 심사지침

제품표준서 예시 확인

- ★ 기준서 등에 자가시험 항목 설정 및 기재 요령
- 품목허가증 '시험규격'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항목은 각각 기재하여야 함
- ▶ 멸균을 요하는 제품 등의 경우 '무균시험' 및 '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'
- ▶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'누설전류시험, 접지저항시험' 및 '전원입력시험'
- ※ 수입업체 : 원칙적으로 제조업체와 동일 적용 다만,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
- ※ 1등급의 경우 식약청 기준규격, 제조원(수입업체에 한함)의 시험성적서, KS(P), 기타 국제규격 등을 근거로 설정





제품표준서 예시(원자재, 반제품, 완제품 검사]

	품질경영계획서	문서번호	OOOODMF-001
어사면	白근ㅇㅇ게ㅋ시	제·개정일자	2005, 00, 00
日 工 3	형명 : ○○○○-001	제·개정번호	0
	88.0000 001	페 이 지	5 / 19

6. 원자재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

- 검사방법 : Sampling검사
- 검사기준 : KS A ISO 2859-1 기준, İ로트크기는 1일 입고량을 기준으로 함
- KS에 준하는 국제규격 승인제품에 대하여는 입고검사를 실시하지 않음

원자재	시험항목	시험기준	시험방법
А			
В			
С			
D			
E			

	품질경영계획서	문서번호	OOOODMF-001
ले ४ म	요즘 요요 이게 극사	제·개정일자	2005, 00, 00
H 22 78	형명: ○○○○-001	제·개정번호	0
	88 : 0000 001	페 이 지	6 / 19

7. 반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(공정검사)

- 검사방법 : 전수검사

공정명	시험항목	시험기준	시험방법
Α			
В			
С			



제품표준서 예시(원자재, 반제품, 완제품 검사]

8. 완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

- 검사방법 : Sampling검사
- 검사기준 : KS A ISO 2859-1 기준, 보통검사 1회 Sampling, 특별검사수준 (S-2), AOL 1.0을 적용, 로트 크기는 1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
- ※ 업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경 지경 시험기관에 연 1회 시험의 한다.
- 가. 전기·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

변호	시험항목	Al	험	기	준	시 혐 방 법
1	누설전류 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19. 연속누설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의 시험방법에 의 함
2	내전압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20. 내전압의 시험방법에 의함.
3	접지저항 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18. 보호접지, 기능접지 및 등전화의 시험방법에 의함
4	과열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42. 과열시험의 시험방법에 의함.(주위몬도: 25℃)
5	전원입력 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7. 전원입력시험에 의함
6	전압 및 메너지 제한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15. 전압 및 메너지 제한 시험방법에 의함

	품질경영계획서	문서번호	OOOODMF-001
어 ㅅ 田	품필성공계력시	제 · 개정일자	2005, 00, 00
H 57. 9	형명 : 〇〇〇〇-001	제·개정번호	0
	88.0000-001	페이지	8 / 19

번호	시 힘 항 목	Ŋ	힘	기	준	시 혐 방 법
8	내압력 내충격 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21.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 메 의함
9	방수 <i>,</i> 방습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44. 넘침, 흘림, 누휼, 습 기, 액체의 침입, 청소, 소 독 및 멸균 시험방법에 의 합
10	기계적 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23.표면, 모서리 및 테두리 시험에 의함
	// // N B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24. 정상사용시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의함
	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49. 전원의 차단 시험방법 에 의함
11	기타 구조적 안전시험					식약청고시 제2004-65호 56. 부품 및 조립 일반 시 허바변에 이하

자가시험 심사 지침(공통)

- 공통 적용사항
 - ★ 일반원칙

의료기기제조(수입)업자는 제조(수입)한 의료기기가 최소한 당해 품목허가증의 허가항목 중 '시엄규격'에 <u>기재된 항목의 기준 전부</u>에 적압암을 다음에 따라 '자가시엄'을 통하여 확인 (보증)하여야 한다

(1) 품목허가증의 '시험규격'은 당해 의료기기의 품질이 의도된 사용목적 등에 적합함을 확인(보증)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기준 이며, 그 밖에 품목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허가시와 동일한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(보증)하기 위한 시험규격이 존재할수 있음.

자가시험 심사 지침(공통)

- 공통 적용사항
 - (2) 자가시험'은 최종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검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GMP 기준 운영내에서의 관련 활동으로서 결과적으로 당해 규격 적합성을 확인(보증)하는 것 (예 : Validation 등)도 포함 됨.
 - (3) 의료기기제조(수입)업자가 품질경영계획서(제품표준서) 등에 '자가시험'으로 기재하는 항목 및 시험기준은, 원칙적으로 품목허가증의 '시험규격'에 의거 기재하되 품목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허가시와 동일한 품질 유지여부를 확인(보증)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규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(4) '자가시험'을 실시하는 시험방법은 품목허가증이나 식약처의 기준규격 고시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최종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포함하여 GMP 기준 운영내에서의 관련 활동으로서 결과적으로 당해 규격 적합성을 확인(보증)하는 것 등도 인정함.

자가시험 심사 지침(제조업자)

- 자가시험 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·기재 요령
 - (1) 시험항목
 - 품목허가증 '시험규격'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* 품목어가증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기째할 수 있음.
 - 가) **멸균**을 요하는 제품 등의 경우 '무균시험' 및 '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'
 - 나)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'누설전류시험', '접지저항시험' 및 '전원입력시험'
 - 다) 기타 당해 제품의 성능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항목 등 제품 특성에 따라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시험항목
 - (2) 시험기준
 - 기재 항목 중 품목허가증에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'품목허가증 시험규격의 기준에 의함'으로 기재할 수 있되, 품목허가증 보다 엄격한 기준 등을 자체 설정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, 허가증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적정한 기준을 자체 설정할 수 있음.

자가시험 심사 지침(제조업자)

- 자가시험 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·기재 요령
 - (3) 시험방법
 - 기재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 시험방법을, 그렇지 않은 경우 가급적 그 확인(보증)방법을 GMP 기준 운영내에서의 관련 활동 종류로 각각 하여야 함
 -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'시스템 보증' 등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**구체적인 보증방법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**

자가시험 심사 지침(수입업자)

- 자가시험 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·기재 요령
 - (1) 시험항목
 -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의 적용사항과 동일함.
 - 가) 멸균을 요하는 제품 등의 경우 '무균시험' 및 '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'
 - 나)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'누설전류시험', '접지저항시험' 및 '전원입력시험'
 - 다) 기타 당해 제품의 성능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항목 등 제품 특성에 따라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시험항목
 - (2) 시험기준
 - 기재 항목중 품목허가증에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'품목허가증 시험규격의 기준에 의함'으로 기재할 수 있되, 제조원의 품질방침 등에 따라 품목허가증 보다 엄격한 기준 등을 자체 설정하여 기재할 수 있음.

자가시험 심사 지침(수입업자)

- 자가시험 항목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설정·기재 요령
 - 품목허가증에 없는 항목의 경우 '제조원의 기준에 의함' 등 적정한 기준을 자체 설정하여 기재할 수 있음

(3) 시험방법

- 기재 항목 중 국내에서 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항목은 구체적 시험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,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'자가시험'을 갈음하는 항목은 '제조원의 시험방법에 의함'으로 기재할 수 있음.





4. 사후관리 분야 Q&A

사후관리 분야 Q&A



Q1

의료기기 제조업자임과 동시에 의료기기판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.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"의료기기 품질책임자"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 이때 의료 기기 판매업과 관련된 "관리책임자"를 지정하나요?

(A1)

의료기기 제조업자라도 의료기기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「의료기기법」제18조제1항(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)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호(판매업자·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)에 따라 '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'을 준수하여야 함따라서,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'품질책임자'를 지정하는 것과 별개로 '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'에 의한 '관리책임자'를 두어야 함다만, '관리책임자'와 '품질책임자'는 겸직하는 것이 가능 함

사후관리 분야 Q&A



Q2

의료기기 **판매업 신고 면제대상**은 어떻게 되나요?

(A2)

「의료기기법」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료 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

다만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함

- •의료기기 취급자 : 의료기기 제조·수입·수리·판매·임대업자, 의료기관개설자 및 동물병원개설자
- 참고로, 「의료기기법」제46조(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)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는 농림축 산 식품부 소관 사항 임

사후관리 분야 Q&A



Q3

자사가 제조·수입 품목허가를 득한 **의료기기를 취하 한 후 수리할 경우 수리업** 신고 대상인가요?

(A3)

「의료기기법」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수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수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수리에 필요한 시설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함

그러나, 같은 조항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허가(신고)를 받은 자가 자사에서 수입한 의료 기기만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

다만, 수입업자가 보유한 품목이 취하된 경우 동 의료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수리업 신고가 필요한 사항임



감사압니다.



"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"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?

-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, 불이익보호조치,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

♣보호조치 요구 방법

우편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,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/전화 044-200-7773백스 044-200-7949

